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 규정의 명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업무 수탁기관을 적용대상에추가하고, 사고·준사고 데이터 처리 담당자 및 의무보고 데이터 처리담당자의 업무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해요인 목록과 심각도의 정량 평가방법을 신설하여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업무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항공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아래 <그림 1>을 아래와 같이 한다.

<그림 1. 안전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제2조제14호 중 "법 제2조제10의4마목의 전단"을 "법 제2조제10의4마목"으로, "investigation)로"를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로, "각 목"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고조사데이터"란 법 제2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 ent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 본 지침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제15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이란 국가의 항공안전 현황과 핵심 리스 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문서, 통계 또는 시각화 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서(기관)"를 "부서와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제서비스 업무"를 "항공교통업무"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 시행규칙」,「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0항"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 시행규칙」,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단,정비조직인증"을 "정비조직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항안전환경"을 "공항운영"으로, "단 각"을 "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항행시설과"를 "항행위성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공자격팀: 법 제4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운항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분석·활용 등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다만,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분석한 안전데

이터를 총괄 분석·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

제4조제1항제10호(종전의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원

제4조제1항제10호(종전의 제9호) 가목 전단 중 "따라 업무담당자가 의무보고 한 건에 대해"를 "따른 업무담당자가"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정보의 도출을 위한 초도분석과 내현요소"를 "정보에 대한 식별·분류 결과(이하 "초도분석"이라 한다)와 내재요소"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고조사위는 필요시 위험기반 분석 등을 통하여 의무보고 내용을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분류한 검토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의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 ④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3조부터 제21조에 따라 해당 의무보고를 처리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유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술원 공유) 관리책임자는 보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의무보고를 기술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업무담당자는"을 "업무담당자 및 제12조에 따라 의무보고를 공유받은 기술원은"으로, "기본정보 발생(일시, 위치, 항공사 · 관련기관 명칭, 기종, 기번, 기상, 보고자 등)을 포함한 발생개요(이하 "외현요소 정보"라 한다)"를 "외현요소 정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갈음 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발생내용"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기술원이 주간단위로 제출하는 초도분석을 상시 검 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력·저장한다"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력·저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별표 3"을 "별표 20의2"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관리책임자 및 접수담당자"를 "관리책임자,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로, "활용 할 수 있는"을 "활용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고조사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
- 1. 사고, 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통보 자료
- 2. ICAO에 제출하는 항공기 사고·준사고 자료 보고서(ADREP 또는 IDREP)

- 3.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
- 4. 중간보고서
- 5. 최종보고서

제28조제3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8조 따라 식별한 국가 위해요인별"을 "제28조에 따라 국가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위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각 접수담당자는"을 "담당부서장은"으로, "국토교통부고시「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2조"로, "한다"를 "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항공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3조에 따라 각 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공유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별표 8"을 "별표 8 및 별표 8의2"로 하고, 같은 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4절"을 "제4장 제3절"로 한다.

제5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할 때 별표 12에 따른 방법을 활용할수 있다.
- ④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에 대한 발생 빈도를 표 5에 따라 구분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위험도 평가) ①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각 국가위해요인의 심각도 및 발생빈도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위험도를 수치화한 그림 기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는 리스크패널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59조제2호 중 "명칭 :"을 "위해요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감조치"를 "경감"으로, "개선조치"를 "개선조치 내용, 추진상태(담당자)"로, "있다) 및 이행상태"를 "있다)"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위험도 평가 : 빈도, 심각도, 평가결과 등급(평가일)
- 6. 위험도 재평가 : 빈도, 심각도, 평가결과 등급(평가일)
- 7. 위험도 재경감 조치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 생략 할수 있다)

<표 7. 위험도 대장(risk register)>

시벼		잠재결과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경감	
식별 위해의	위해요인		빈도	심각도	결과 (평가일)	조치내용	추진상태 (담당자)	빈도	심각도	결과 (평가일)	조치내용
					4C	▶ 행동절차 보완	진행중 (OOO)				
1	안전문화		4	С	('19.6.11)	▶ 안전문화 증진 - 요령 재교육 -	진행중 (OOO)				
2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74조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서비스제공자"를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 서비스제공자"로, "등 시각화하여"를 "등으로 시각화하여"로 한다.

제87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8의2 및 별표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

한국형 위해요인 분류체계(제51조 관련)

식별 번호	대분류	운영	유형	위해요인	위해요인(영문)
0001	조직	전 분야	관리	상업적 압박	Commercial Pressures
0002	조직	전 분야	관리	규정 및 절차의 개발과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procedures
0003	조직	전 분야	관리	안전관리시스템	Effectiveness of safety management
0004	조직	전 분야	관리	미흡한 조직 안전 문화	Insufficient safety culture of organisation
0005	조직	전 분야	관리	미흡한 절차지침	Incorrect or incomplete procedures including instructions
0006	조직	전 분야	관리	미흡한 교육훈련	Incorrect or incomplete or lack of training and knowledge transfer
0007	조직	전 분야	관리	절차지침 부재	Incorrect or incomplete procedures including instructions
8000	조직	전 분야	관리	변경, 업그레이드, 신규 도입 후 교육 및 숙달 미흡	Changes, upgrades or new tools, equipment, processes or facilities
0009	조직	전 분야	관리	비공식 절차 수행	Informal processe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0010	조직	전 분야	절차	미흡한 매뉴얼·운영절차	Lack of, incorrect or incomplete manuals, or operating procedures
0011	조직	전 분야	절차	미흡한 보고 및 기록	Lack of, incorrect or incomplete reports and records
0012	조직	전 분야	절차	문서 업데이트 절차 및 전 파 미흡	Lack of, incorrect, incomplete or complicated document update processes
E001	환경	전 분야	기상	악기상(난류, 우박, 뇌우, 강설 등)	Adverse convective weather (turbulence, hail, lightning, and ice)
E002	환경	전 분야	기상	청천난류	Clear Air Turbulence and mountain waves
E003	환경	전 분야	기상	측공	Crosswind
E004	환경	전 분야	기상	착빙(비행 중)	lcing in flight
E005	환경	전 분야	기상	착빙(지상운항 중)	Icing on Ground
E006	환경	전 분야	기상	급변풍	Windshear
E007	환경	전 분야	기상	안개(저시정 상태)	Fog (low-visibility conditions)
E008	환경	전 분야	기상	강설(폭설)	Snow (heavy snow)
E009	환경	전 분야	기상	낙뢰	Lightning Strike
H001	인적	전 분야	능력	경험, 자격·훈련, 지식 및 역량 부족	Experience, Qualifications, Training, Knowledge
H002	인적	전 분야	능력	업무량 관리	Workload Management

식별 번호	대분류	운영	유형	위해요인	위해요인(영문)
H003	인적	전 분야	능력	부적절한 상황인식	Situational Awareness, Spatial Disorientation, Illusions, Attention, Distraction, Cognitive Limitation
H004	인적	전 분야	능력	주의 분산	Attention, Distraction
H005	인적	전 분야	의사소통	부적절한 의사소통	Communication
H006	인적	전 분야	의사소통	부적절한 의사결정 또는 판단	Information Processing, Decision Makin
H007	인적	전 분야	의사소통	협조 미흡	Coordination
H008	인적	전 분야	건강	피로	Fatigue, Alertness
H009	인적	전 분야	건강	정신적 안정 상태	Mental, Emotional State
H010	인적	전 분야	건강	성격 및 태도	Personality, Attitude
H011	인적	운항	능력	운항승무원의 훈련, 경험, 역량	Experience, Training and Competence of Individuals
H012	인적	운항	능력	운항승무원의 상황 인식	Perception and situational awareness
H013	인적	운항	의사소통	운항승무원의 인적자원관리, 의사소통	CRM and Operational Communication
H014	인적	운항	의사소통	운항승무원의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and Planning
H015	인적	운항	의사소통	문항승무원의 자동조종 모니터링	Monitoring of Flight Parameters and Automation Modes
H016	인적	운항	의사소통	문항승무원의 비행계기 감시 실패	Monitoring Monitoring
H017	인적	운항	건강	운항승무원의 건강상태	State of wellbeing and fit for duties
H018	인적	운항	건강	운항승무원의 피로 관리	Fatigue
H019	인적	운항	건강	운항승무원의 질환 발생	Gastrointestinal IIIness
H020	인적	운항	건강	운항승무원의 정신건강	Mental Health
H021	인적	운항	건강	운항승무원의 심리적 압박	Personal Pressure and Alertness
H022	인적	운항	건강	운항승무원의 의식상실	Flight Crew Incapacitation
H023	인적	운항	건강	운항승무원의 조종업무 수행능력 상실	Impairment, Incapacitation
H024	인적	관제	능력	관제사의 항공기 감시 실패	Monitoring
H025	인적	관제	능력	관제사의 인지능력 저하	Cognitive Capacity
H026	인적	관제	의사소통	관제절차 및 관제허가 준수	Compliance with ATM(Air Traffic Management) procedures and clearances
H027	인적	관제	의사소통	관제 신기술 및 자동화	New technologies and automation (TWR; Aerodrome control tower or aerodrome

식별 번호	대분류	운영	유형	위해요인	위해요인(영문)
					control, SWIM; 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H028	인적	공항	능력	공항 종사자의 훈련, 경험, 역량	Experience, Training and Competence of Individuals
H029	인적	공항	능력	공항 종사자의 상황 인식	Perception and situational awareness
H030	인적	공항	의사소통	공항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 의사소통	CRM(Crew Resource Management) and Operational Communication
H031	인적	공항	건강	공항 종사자의 피로 관리	Fatigue
H032	인적	정비	의사소통	정비사의 항공기 점검 미흡	Inspection
T001	기술	운항	비행 전 준비	비행 계획 및 준비 미흡	Poor pre-flight planning and preparation
T002	기술	운항	비행 전 준비	비행 전 점검 미흡	Poor pre-flight planning and preparation
T003	기술	운항	비행 전 준비	비행계획 및 준비	Flight Planning and Preparation
T004	기술	운항	비행 전 준비	항공기 연료 오염 및 품질	Fuel contamination and quality
T005	기술	운항	비행 운항	접근경로 관리	Approach Path Management
T006	기술	운항	비행 운항	복행 조작	handling and execution of Go-arounds
T007	기술	운항	비행 운항	항공기 성능 데이터 입력	Entry of Aircraft performance data
T008	기술	운항	비행 운항	부적절한 비행 조작	Inappropriate flight control inputs
T009	기술	운항	비행 운항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 접근	Alignment with wrong runway
T010	기술	운항	비행 운항	부적절한 이륙	Incorrect rotation at take-off
T011	기술	운항	비행 운항	운항 중 기술적 고장 처리	handling of technical failures
T012	기술	운항	비행 운항	지상활주 속도 및 방향 조작	Taxi speed and directional control
T013	기술	운항	비행 운항	항공기 제동 및 조향	Braking and Steering
T014	기술	운항	비행 운항	지상활주 제한속도 초과	Excessive speed in maneuvering area
T015	기술	운항	비행 운항	활주로 표면 상태	Runway surface condition
T016	기술	운항	비행 운항	잘못된 항공기 계기 착륙 시설(ILS) 전파 수신	False or disrupted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Signal Capture
T017	기술	운항	비행 운항	무인항공기와 분리	Airborne separation with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T018	기술	운항	비행 운항	비행 연료 관리	Fuel management
T019	기술	운항	비행 운항	화재 연기 영향	Fire and smoke effects

식별 번호	대분류	운영	유형	위해요인	위해요인(영문)
T020	기술	운항	비행 운항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Bird, Wildlife Strikes
T021	기술	운항	비행 운항	연기 영향	Fumes Effects
T022	기술	운항	비행 운항	운항 승무원간 인적자원관 리(CRM) 및 의사소통 부족	Insufficient CRM(Crew Resource Management)
T023	기술	운항	비행 운항	기대편향(익숙한 습관)	expectation bias
T024	기술	운항	비행 운항	유사 호출부호	Similar sounding or confusing call signs
T025	기술	운항	비행 운항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오류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error
T026	기술	운항	비행 운항	항공기 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Knowledge of aircraft systems and procedures
T027	기술	운항	비상상황	비상탈출	Emergency evacuation
T028	기술	운항	비상상황	승객 비상탈출 교육	Emergency education of air passenger
T029	기술	운항	보안	승객 난동	Disruptive Passenger
T030	기술	운항	보안	레이저 빔	Laser
T031	기술	관제	공역	공역 침범	Airspace infringement
T032	기술	관제	공역	비행절차, 장애물 정보 제공	Procedure design and obstacle publication
T033	기술	관제	관제 업무	타 항공기 항적에 의한 난기류	Wake Vortex
T034	기술	관제	관제 업무	관제로 인한 불안정한 접근	ATM influence on the non-stabilized approaches
T035	기술	관제	관제 업무	항공기 후방견인 협의 및 수행	Coordination, handling of pushback
T036	기술	관제	관제 업무	시계비행과 계기비행 간 분리	Deconfliction IFR and VFR
T037	기술	관제	관제 업무	트랜스폰더 미사용 항적 분리	De-confliction with aircraft operating without transponder
T038	기술	관제	관제 업무	기상정보 제공	Provision of weather information (turbulence, windshear, convective weather)
T039	기술	관제	관제 업무	저고도 바람 정보	Wind information (wind at low height)
T040	기술	관제	관제 업무	유사 호출부호	Similar sounding or confusing call signs
T041	기술	관제	관제 업무	관제기관 간 또는 관제기관 내 부적절한 협의	poor coordination in ATC(Air Traffic Control)
T042	기술	관제	관제 업무	사용활주로 변경	runway change
T043	기술	관제	관제 업무	평행활주로 동시 접근 시 근접 항공기 분리 (미흡)	Simultaneous Approaches to Parallel Runways
T044	기술	관제	관제 업무	항공로 폐쇄 또는 항공로 변경	Flight route congestion

식별 번호	대분류	운영	유형	위해요인	위해요인(영문)
T045	기술	관제	관제 업무	부적절한 관제지시	Incorrect, confusing, or incomplete communications between ATC(Air Traffic Control) and aircraft
T046	기술	관제	관제 업무	저도고(미확인) 항공기	Separation from low altitude or Unknown Aircraft
T047	기술	관제	관제사 행동	근접 항공기 충돌 감지	Conflict detection with closest aircraft
T048	기술	관제	관제사행동	점유 활주로 인지 실패	Undetected occupied runway
T049	기술	관제	군 항공기	군 항공기 급기동	Abrupt Maneuver
T050	기술	관제	시설	비정상 운영 상황/저하 모 드 운영	Abnormal operating conditions, Degraded modes
T051	기술	관제	시설	사이버 보안	Cyber security
T052	기술	관제	시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 미숙	new technologies and automation
T053	기술	관제	시설	감시서비스 시설(레이더, 위성, 무선항법장비(VOR), 자동종속감시방송시설 (ADS-B) 등) 장애	Failure of surveillance service (Radar, satellite, Vor; Very high frequency Omni directional Range, 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
T054	기술	관제	시설	항행서비스 시설(무선항법 장비(VOR), 거리측정장비 (DME), 계기착륙시설(ILS), 위성항법시스템(GNSS), 무지향성표지(NDB) 등) 장애	Failure of navigation service (Vor; Very high frequency Omni directional Range, DME;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NDB; Non Directional Beacon)
T055	기술	관제	의사소통	공지통신 실패	Failure of Air and Ground communications
T056	기술	관제	의사소통	관제시와 조종사 간 부적절한 교신	Lack of, or poor communication
T057	기술	관제	조종사오류	무인항공기 관련 장애	Integration of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and Drones
T058	기술	관제	조종사오류	공중충돌경고장치 경보 (ACAS RA) 미이행	ACAS RA(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Resolution Advisories) not followed
T059	기술	관제	조종사 오류	활주로 충돌 위험(고속)	High energy runway conflict
T060	기술	관제	조종사오류	허가받지 않은 이착륙, 횡단	Landing, take-off, crossing without clearance
T061	기술	관제	조종사오류	고도 이탈	Level Bust
T062	기술	관제	조종사오류	관제지시 또는 관제허가 미준수	pilot deviation
T063	기술	공항	공항 운영	공항 운영 환경 상태	Condition and Serviceability of Airport Operating Environment
T064	기술	공항	공항 운영	공항 이동지역 작업 통제	Control of airside works

식별 번호	대분류	운영	유형	위해요인	위해요인(영문)
T065	기술	공항	공항 운영	계류장 내 승객 통제	Control of Passengers on the Apron
T066	기술	공항	공항 운영	비상 및 비정상 운영	Emergency, abnormal operations
T067	기술	공항	공항 운영	신기술 적용	Emerging technologies
T068	기술	공항	공항 운영	거동 불편 승객 관리	Handling of Passengers with Reduced Mobility
T069	기술	공항	공항 운영	탑승교 운영	Operation of Air Bridges, PBB(Passenger Boarding Bridges)
T070	기술	공항	공항 운영	탑승교 가용 상태	Serviceability of Air Bridges, PBB(Passenger Boarding Bridges)
T071	기술	공항	공항 운영	계류장, 주기장 가용 상태	Serviceability of Apron and Stand
T072	기술	공항	공항 운영	활주로, 유도로 가용 상태	Serviceability of Runways, Taxiways
T073	기술	공항	공항 운영	공항 이동지역(계류장, 주기장, 활주로, 유도로 등) 내 외부 이물질(FOD)	FOD(Foreign object damage)
T074	기술	공항	공항 운영	조류, 야생동물 통제 미흡	bird and wildlife control
T075	기술	공항	시설	계류장, 주기장 설계	Apron, Stand Design and Layout
T076	기술	공항	시설	탑승교 설계	Design of Air Bridges, PBB(Passenger Boarding Bridges)
T077	기술	공항	시설	조업장비(무동력) 설계	Design of Ground Equipment (Non-Motorised)
T078	기술	공항	시설	조업장비(동력) 설계	Design of Vehicles (Motorised GSE; Ground Support Equipment)
T079	기술	공항	시설	활주로, 유도로 설계 및 배치	Poor or inadequate runway, taxiway design and layout
T080	기술	공항	시설	유도로 및 활주로 배치 복잡성	Taxiway and runway system complexity
T081	기술	공항	시설	공항 터미널 설계	Terminal Design and Layout
T082	기술	공항	시설	불완전한 공항 표지 및 등화 시설	Faulty, incorrect or incomplete airfield markings, airfield lighting (especially in movement areas)
T083	기술	공항	지상조업	항공기 견인	Aircraft towing
T084	기술	공항	지상조업	여객기 수하물, 화물 탑재	Baggage and Cargo Loading in Passenger aircraft
T085	기술	공항	지상조업	화물기 화물 탑재	Cargo Loading in Cargo aircraft
T086	기술	공항	지상조업	항공기 대기시간 협조 및 통제	Coodination and Control of Turnarounds
T087	기술	공항	지상조업	위험물 취급 및 리튬배터리	Inadequate handling of dangerous goods and lithium batteries
T088	기술	공항	지상조업	급유	Fuelling Operations

식별 번호	대분류	운영	유형	위해요인	위해요인(영문)
T089	기술	공항	지상조업	항공기 주변 지상조업	Ground Staff Movement Around Aircraft
T090	기술	공항	지상조업	화물적재 서류 및 기타 서류/시스템	Load Sheets and Other Documentation/Systems
T091	기술	공항	지상조업	조업장비(무동력) 운영	Operation of Ground Equipment (Non-Motorised) Operation of Vehicles (and Other
T092	기술	공항	지상조업	조업장비(동력) 운영	Motorised GSE; Ground Support Equipment)
T093	기술	공항	지상조업	항공기 주기	Parking and Positioning of Aircraft
T094	기술	공항	지상조업	조업장비 위치지정, 고정	Positioning and Securing of Ground Equipment
T095	기술	공항	지상조업	항공기 후방견인 (Push-Back)	Pushback operations incorrectly performed
T096	기술	공항	지상조업	조업장비(무동력) 가용 상태	Serviceability of Ground Equipment(Non-Motorised)
T097	기술	공항	지상조업	조업장비(동력) 가용 상태	Serviceability of Vehicles(Motorised GSE; Ground Support Equipment)
T098	기술	공항	지상조업	위탁수하물 및 화물(리튬 배터리 취급 및 운송)	Inadequate handling of dangerous goods and lithium batteries
T099	기술	공항	지상조업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위험물 운송	Inadequate handling of dangerous goods
T100	기술	공항	지상조업	리튬배터리 취급 및 운송	Inadequate handling of dangerous goods and lithium batteries
T101	기술	공항	지상조업	악기상 시 지상조업	Ground operations in extreme temperatures, in high winds, rain and thunderstorms, in low-visibility conditions, in snow/ice conditions
T102	기술	공항	지상조업	지상조업장비의 잘못된 운영	Incorrect operation of ground support equipment
T103	기술	공항	지상조업	에어사이드 차량 운영	Airside Vehicle Operations
T104	기술	공항	지상조업	항공기 견인(Towing)	Towing operations incorrectly performed
T105	기술	공항	황이용	항공기 자력 지상이동	Aircraft movement under its own power
T106	기술	공항	황이용	제트엔진 후류	Jet Blast
T107	기술	공항	활주로 상태	활주로 표면 상태	Runway surface condition
T108	기술	공항	활주로 상태	활주로, 유도로 운영 및 상태	Poor maintenance and serviceability of runways, taxiways
T109	기술	정비	정비활동	고장(항공기 엔진 외 시스템)	Aircraft maintenance (NP; None Power plant)
T110	기술	정비	정비활동	고장(항공기 엔진)	Aircraft maintenance (PP; Power plant)
T111	기술	정비	정비활동	항공기 시스템 신뢰성	Other aircraft system reliability

식별 번호	대분류	운영	유형	위해요인	위해요인(영문)
T112	기술	정비	정비활동	항공기 엔진 신뢰성	Engine system reliability
T113	기술	정비	정비활동	미흡한 정비 완료 확인	Lack of, or poor maintenance release
T114	기술	정비	정비활동	미흡한 정비 프로그램	Lack of, or poor maintenance programs (Including imprecise maintenance data or transcription errors when creating job-cards)
T115	기술	정비	정비활동	미흡한 정비 신뢰성(정비 감시) 프로그램	Lack of or, inadequate reliability program

비고

- 1. 한국형 위해요인은 대분류, 운영, 유형으로 구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라 표 3 위해요인 등록부의 '위해요인 분류'를 작성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 2. '대분류'는 조직, 환경, 인적, 기술적 위해요인으로 구분하고, '운영'은 전 분야, 운항, 정비, 관제, 공항으로 구분하며, '유형'은 관리, 절차, 기상, 능력, 의사소통, 건강, 비행 운항, 비행전 준비, 비상상황, 보안, 공역, 관제 업무, 관제사 행동, 군항공기, 시설, 조종사 오류, 공항 운영, 지상조업, 항공기 이동, 활주로 상태, 정비활동등으로 구분한다.

[별표 12]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의 심각도 정량평가 방법(제55조 관련)

1. 목적

본 별표는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심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위해요인의 심각도 평가는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 및 표 4(위해요인별 발생결과의 심각도 구분)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국가 위해요인 분석 업무를 수행 시 심각도 정량평가 기법(이하 "정량적 기법"이라 한다)을 통해 산출된 위험도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2. 사용 데이터

정량적 기법은 법 제2조제10호의4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Input Data)로 사용한다.

- 가. 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따라 보고된 자료
- 나. 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에 따라 보고된 자료
- 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에 따른 조사결과
- 라. 법 제60조(사실조사) 및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 마. 그 외 항공안전이벤트, 위해요인 및 전조징후의 발생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3. 위해요인 심각도 정량평가 절차

다음 각목에 따라 각 위해요인이 유발한 항공기 사고·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및 관련 안전감독결과 등 이벤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며, 그림 1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각 위해요인의 심각도 점수를 계산한다. 이후, 표 1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각 위해요인의 심각도 등급을 구분한다.

- 가. 기여도 : 위해요인이 이벤트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
- 나. 지표유형 : 위해요인이 유발한 이벤트의 발생유형 및 국가항공안전지표 해당 여부
- 다. 이벤트 등급 : 이벤트 발생에 따른 물적, 인적 피해도
- 라. 경과일 : 이벤트 발생 경과일

[그림 1. 위해요인 심각도 점수 산출 방법]

□ 심각도 점수 산출식

$$S_i = \frac{\sum_{e=1}^{n} (o_e \times t_e \times c_i \times tw_e)}{n}$$

- S_i : 요인(i)에 대한 심각도

- o_e : 요인()에 의해 발생한 이벤트(e) 등급

- t_e : 요인(\emph{i})에 의해 발생한 이벤트(\emph{e}) 유형

- c_i : 이벤트($extit{ heta}$) 발생에 대한 요인($extit{ heta}$)의 기여도

- tw_e : 이벤트(e)에 대한 시간 가중치

- n : 요인()에 의해 발생한 이벤트 총 건수

□ 매개변수별 가중치

- (**이벤트 등급**) 사고: 10, 준사고: 4.4, 안전장애: 1.63, 자율보고: 0.79, 안전감독: 0.72

- (**지표 유형**) 경보지표: 10, 관심지표: 3.98, 안정지표: 1.75, 지표 외: 1.08

- (**기여도**) 주요인: 10, 보조요인: 3.21, 간접요인: 1.57

- (시간) $tw_e = [1-2/(d+1)]^l$

이때, d는 입력 데이터의 시간 범위(1095일)이며, l은 패널회의 개최일로부터 이벤트 발생 경과일

[표 1. 위해요인 심각도 등급 구분 기준]

구분	심각도	기준 점수	가중치		
Α	매우 심각	1,000 이상	구분	요인	가중치
	(Catastrophic)	,		항공기사고	10.00
	위험	1,000 미만,		항공기준사고	4.40
В	(Hazardous)	1,000 기년, 127.99 이상	이벤트 등급	항공안전장애	1.63
	(Flazardous)	127.99 073		자율보고	0.79
•	중요	127.99 미만,		그 외(안전감독 등)	0.72
С	(Major)	67.96 이상 [°]		경보지표	10.00
	<u> </u>		키ㅠ O N	관심지표	3.98
D	경미	67.96 미만,	지표 유형	안정지표	1.75
D	(Minor)	7.93 이상		지표 외	1.08
				주요인	10.00
Е	매우 경미	7.93 미만	기여도	보조요인	3.21
	(Negligible)	7.33 미단		간접요인	1.57
					1

4. 정량적 기법 적용시 고려사항

정량적 기법은 항공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해요인별 심각도를 일괄 산출하는 기법으로, 동일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위해요인별 심각도를 시계열적으로 관리하는데 용이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단, 신종리스크나 산업현장에 내재된 리스크가 입력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량적 기법과 더불어리스크 패널 등을 통한 정성적 평가를 모두 이행할 필요가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 법 제2 14. "사실조사데이터"란 법 제2 조제10의4마목----조제10의4마목의 전단에 해당 하는 사실조사(safety investi ----- investig 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gation)로, 본 지침 제28조제3 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각 호----을 포함한다. 15. "사고조사데이터"란 법 제2 15. "사고조사데이터"란 법제2 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조제10의4마목의 후단에 해당 하는 사고조사(Accident and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Incident investigation)으로 법률 | 제19조에 따른 사고조 다음 각 호에 따른 항목을 포 사(Accident and Incident Inv 함하며, 세부내용은 「항공철 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 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 료로, 본 지침 제22조제2항의 사 매뉴얼 제9장9.1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 다. 함한다. <삭 제> 가. 사실정보(factual informa tion) 나. 원인분석(analysis) <u><삭 제></u> 다. 사고조사결과(conclusion) <삭 제> 라. 안전권고(safety recomm <u><삭 제></u> endation)

16. ~ 32. (생 략) <u><신 설></u>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국 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안전데이터를 관리 및 활용하는 <u>부서(기관)</u>에 적용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 통본부 및 지방항공청에서 <u>관제</u>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u>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u>.

제4조(담당부서 및 임무) ① 안전 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안전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관리· 활용 관련 담당부서 및 임무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 시행규칙」,「항공안 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16. ~ 32. (현행과 같음)
33.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
이란 국가의 항공안전 현황과
핵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고 평가한 문서, 통계 또
는 시각화 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부서와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8조의3에 따른 항공안전
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
다)
2
<u>항공</u>
<u>교통업무</u>
제외한다.
제4조(담당부서 및 임무)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에 대한 직제 시행규칙」, 시행
<u>령 제26조제1항 및 제10항</u>

라 한다) 제26조제1항 · 제10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정책과 1.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법 제4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의 운항분야 안전데이터 총괄. 이 경우, 각 지방항 공청에서 수집 • 분석한 자 료를 총괄하는 것을 의미 <u>한다.</u>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항공기술과 : 항공기제작 • 인 증, 정비조직인증 등 소관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 · 분석 · 활 용(단, 정비조직인증 분야는 --정비조직인증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 · 분 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 • 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 4. (현행과 같음) 4. (생략) 5. 공항안전환경과 : 공항 관련 5. 공항운영-----이동지역 운영, 시설 점검 • 관 리, 공항주변 환경 및 야생동

물 출몰 관리 등 소관 분야 관

련 안전데이터의 접수・분석

- 활용(<u>단</u>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활용하는 역할에 한한다)
- 6. <u>항행시설과</u> : 항행시설 관련 안전데이터의 접수·분석·활 용 등 총괄

<신 설>

<u>7</u>. · <u>8</u>. (생 략)

- 9. 위탁 전문기관
 - 가. 제5조제2항에 <u>따라 업무</u> 담당자가 의무보고 한 건 에 대해 실시한 분석결과 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이 경우, 외현요소 <u>정보의 도</u> 출을 위한 초도분석과 내 현요소 정보의 도출을 위

		<u>4</u>				 	 	
						 	 	_
-						 	 	_
6.	항	행위	성정	책고	} -	 	 	
-						 	 	_

- 7. 항공자격팀:법제4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운항분야 안전데이터의 접수·분석·활용 등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괄(다만, 각 지방항공청에서 접수·분석한 안전데이터를 총괄 분석·활용하는역할에 한한다)
-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 10. 기술원

가		<u> 따른 업</u>	무담
<u>당자기</u>	}		
		<u>정보여</u>	다
<u>한</u> 식	별 • 분류	· 결과(이하
"초도	분석"이리	} 하1	그) 외

한 심층분석 등 2회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나. · 다. (생 략)

②·③ (생 략)

제11조(사고 및 준사고 여부에 대 한 재검토) ① 접수담당자는 항공안전장애로 제출된 의무보 고 내용이 항공기사고 또는 항 공기준사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통해서 해당 의무보고서를 사고조사위에 공 유하고 이를 재검토 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접수 및 분석 등 은 사고조사위가 검토결과를 회 신할 때 까지 일시 중단한다. ② 관리책임자 또는 접수담당자 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고조사위에 요청한 검토 기록을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여 야 하다.

<u><신 설></u>

나.•다.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고 및 준사고 여부에	대
한 재검토) ①	
<u><후단 삭제></u>	

내재요소 --

- 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고조사위는 필요 시 위험기반 분석 등을 통하여 의무보고 내용을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 애로 분류한 검토결과를 관리책 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위의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접수담당 자 및 업무담당자와 공유하여야

<신 설>

제12조(위탁기관 공유) 관리책임 제12조(기술원 공유) 관리책임자 자는 법 제135조제8항제2호에 템으로 접수된 의무보고를 위탁 전문기관과 공유하고, 위탁 전 문기관의 업무수행결과를 상시 검토하고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발생개요 확인) ① 제9조 에 따라 의무보고를 접수한 업 무담당자는 해당 의무보고의 기 본정보 발생(일시, 위치, 항공사 •관련기관 명칭, 기종, 기번, 기상, 보고자 등)을 포함한 발생 개요(이하 "외현요소 정보"라 한다)를 보고자 또는 보고자의 관계인 및 해당 의무보고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 사고의 경우, 사고조사위의 조 한다.

④ 접수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3조부터 제21조에 따라 해당 의무보고를 처리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유받은 검토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

는 보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의무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보고시스 보고를 기술원과 공유하여야 한 다.

제13조(발생개요 확인) ①
<u>업</u>
무담당자 및 제12조에 따라 의
무보고를 공유받은 기술원은 -
<u>외현요소 정보</u>

사과정에 참여하여 확인한 정보로 <u>갈음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u>따른 발생내용</u> 확인은 유선, 이메일, 서류제출, 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탁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주간단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외현요소 정보에 대한 식별・분류 결과를 참고할수 있다.
<신 설〉

- 제14조(외현요소 정보의 분류) 업무담당자는 제13조에 따른 발생개요 및 검토결과를 활용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데이터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리시스템에 입력·저장한다
 - 1. 항공안전장애 등 해당여부 분류: 접수한 보고서가 항공 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의무보 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등 해당

<u>갈음할 수 있다</u> . ② <u>따른</u>
 < <u>삭 제></u>
④ 관리책임자는 기술원이 주간 단위로 제출하는 초도분석을 상 시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
<u>청할 수 있다.</u> 제14조(외현요소 정보의 분류)
<u>접수일로부터 14</u>
<u>일 이내에 입력·저장한다</u> 1

여부를 분류한다. 다만, 항공 안전장애로 보고된 사항 중 시행규칙 <u>별표 3</u>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적합 보고서가 아닌 "기타 안전보고"로 분류한다.

2. ~ 6. (생략)

제17조(외현요소 정보의 경향성)

- ① 관리책임자는 <u>제10조</u>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 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 하고 이를 항공안전정책관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②・③ (생 략)
- 제21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 ·관리) ① 관리책임자 및 접수 담당자는 제20조에 따른 국가 위해요인 관련 분석결과를 제4 장, 제5장 및 제7장에 따른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는 처리단계별 담당자는 표2와 같다.
 - ② (생 략)

제22조(사고조사데이터의 확보)

·
<u>별표 2</u> 0의2
· 2.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외현요소 정보의 경향성)
① <u>제15조</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
• 관리) ① 관리책임자, 접수담
당자 및 업무담당자
<u>활용할 수 있으며,</u>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사고조사데이터의 확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생 략) 음) ② 사고조사데이터는 다음 각 <신 설>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 1. 사고, 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 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통보 자료 2. ICAO에 제출하는 항공기 사 고·준사고 자료 보고서(ADR EP 또는 IDREP) 3.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 ort) 4. 중간보고서 5. 최종보고서 제28조(사실조사데이터의 생성 및 제28조(사실조사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① · ② (생 략)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 시하는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나르 미에 수시 입력하고 이를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6</u>. ~ <u>15</u>. (현행 제5호부터 제14 <u>5</u>. ~ <u>14</u>. (생 략) 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제31조(위험도 분석) ① 각 담당 제31조(위험도 분석) ① ------부서장은 <u>제28조 따라 식별한</u> ----- <u>제28조에 따라 국가 위해요인별</u> 위험도를 측정 <u>해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위해요</u> 해야 한다. 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② (생략)

제43조(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의 생성 및 활용) ① (생 략) ② <u>각 접수담당자는</u> 제1항에 해 당하는 정보가 <u>국토교통부 고시</u>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리스크 프로파일'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7조(운영여건 분석) ① 항공 안전정책과장은 위해요인을 식 별하기 위해 항공시스템의 특 성, 규모, 복잡성 등 운영여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분 석해야 한다. <<u>후단 신설></u>

<u>제28조에 따라 국가 위</u>		
해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위해요		
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u> 대한</u>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의		
생성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담당부서장은</u>		
<u>「국가항공안전프</u>		
로그램 _ 제42조		
<u>하며,</u>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항공		
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하여야 한		
<u>다</u>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운영여건 분석) ①		
<u>이 경우</u> 제43조에		
· 의 경기 세성도에 따라 각 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		
가 공유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② ~ ④ (생 략)

제50조(안전데이터 종류별 분석담 당) <u>제48조제1항</u> 각 호에 따른 안전데이터별 처리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51조(위해요인 식별결과의 기록) ① 제49조에 따라 국가위해 요인을 식별한 자는 해당 위해 요인에 대한 사항을 나르미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표 3과 같이 위해요인 등록부(hazard register)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생 략)

- 4. 분류 : <u>별표 8</u>에 따른 위해요 인 분류
- 5. · 6. (생략)
- 7. 유형구분 : 위해요인, 발생원 인, 기여요인, 기타 등 구분
- ② ~ ④ (생 략)
- 제52조(자율보고에 대한 위해요인 식별) ① (생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기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안전데이터 종류별 분석담
당) <u>제48조</u>
1. ~ 4. (현행과 같음)
제51조(위해요인 식별결과의 기
록) ①
~ 3. (현행과 같음)
4 <u>별표 8 및 별표 8의2</u>
5. · 6. (현행과 같음)
<u><</u>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자율보고에 대한 위해요인

식별) ① (현행과 같음)

(2) ----

한다.

에서 발굴한 위해요인을 분기 1 회 이상 수집하여 제4절에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위해요인 분 석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다.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 ①・ ② (생 략)

<신 설>

③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 는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에 대한 발생빈도를 표 5에 따라 구분하 고 기록 • 관리되어야 한다.

제56조(위험도 평가) 업무담당자 제56조(위험도 평가) ① 업무담당 또는 관리책임자는 각 국가위해 요인의 심각도 및 발생빈도를 활용하여 그림 7에 따른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는 리스크패널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 제4장 제3절-

|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 할 때 별표 12에 따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책임자 는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에 대한 발생빈도를 표 5에 따라 구분하 고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각 국가 위해요인의 심각도 및 발생빈도 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위험도 를 수치화한 그림 7 위험도 평 가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는 리스크패널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59조(위험도 평가결과의 기록 및 관리)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 책임자는 표 7과 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관리시스템 에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 해야 하다.

·1. (생 략)

- 2. 명칭 : 국가위해요인의 명칭
- 3. (생략)
- 4. 위험도 평가결과 : 심각도, 발 생빈도. 평가결과 등
- 5. 위험도 경감조치 :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개선조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및 이행상태
- 6. 소관부서 및 담당자 : 위험도 경감조치 별 소관부서 및 담 <u>당</u>자
- 7. 위험도 재평가결과 : 심각도. 발생빈도. 평가결과

제70조(발생지표의 모니터링) ① 제70조(발생지표의 모니터링) ① · ② (생 략)

② ~ <u>④</u> (생 략)

제59조(위험도 평가결과의	기록
및 관리)	
•1. (현행과 같음)	
2. 위해요인 :	

- 3. (현행과 같음)
- 4. 위험도 평가 : 빈도. 심각도. 평가결과 등급(평가일)
- 5. ---- 경감 ---------- 개선조치 내용, 추진상태(담당자) ---------- 있다)
- 6. 위험도 재평가 : 빈도, 심각 도, 평가결과 등급(평가일)
- 7. 위험도 재경감 조치내용 (평 가결과에 따라 필요 없는 경 우 생략 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 제74조(안전성과의 평가) ① ~ ④ (생 략)
 - ⑤ 항공안전정책과장은 <u>제3항</u>에 따른 검토결과를 안전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7조(분석기법의 종류) <u>①</u> (생략)
- 제79조(분석결과의 시각화) ① (생 략)
 - ② 항공안전정책과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안전분석 결과, 기타 그 밖의 안전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 분석결과를 서비스제공자 안전프로파일, 기타 대시보드 등 시각화하여활용할 수 있다.
- 제8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항까지와 같음)		
제74조(안전성과의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4항</u>		
제77조(분석기법의 종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9조(분석결과의 시각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 서		
비스제공자 등으로 시각화		
<u>ठेव</u>		
제87조(재검토기한)		
<u>2025년 1월 1</u>		
일		
<u>12월 31일</u>		

-	34	-
	34	